
제127회 교무위원회 안건

2021. 1. 7.



부 의 안 건

보고 안건

제1호 : 제126회 교무위원회 결과 보고 1

심의 안건

제1호 :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(안) 5

의안번호	제 1 호	보 고 안 건
년 월 일	2021. 1. 7.	

제126회 교무위원회 결과 보고

제 출 자	위원장
제출년월일	2021. 1. 7.

제126회 교무위원회 결과 보고

1. 일 시 : 2020. 7. 9.(목) ~ 7. 10.(금)

2. 의결방법 : 서면결의

※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심의안건 1건으로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

3. 참여위원 현황

○ 참여위원 : 위원장 포함 18명

4. 부의안건 및 심의결과

가. 가. 보고안건

○ 제1호 : 제125회 교무위원회 결과 보고 원안의결

나. 나. 심의안건

○ 제1호 :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(안)···원안의결

※ 개정 주요내용

- (제3조) 계약학과 과정에 ‘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’ 신설

[붙임]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3조(계약학과의 명칭, 정원 및 학위) ① 계약학과의 명칭, 학생정원 및 학위명은 [별표1]과 같다.</p> <p>② 계약학과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「고등교육법」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「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」 제8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등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입학학생수 또는 전체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제12조(수료학점 및 수업연한) 계약학과를 수료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은 본 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준한다. <u>다만, 기계설비제어공학과 및 IT융합소프트웨어공학과</u>의 학생은 4학기를 등록하고 석사과정 30학점이상 취득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</p> <p>(신설)</p>	<p>제3조(계약학과의 명칭, 정원 및 학위)① (좌동-생략)</p> <p>② <u>계약학과의 총 입학정원은 학부와 대학원을 통합하여 산정하되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20%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2조(수료학점 및 수업연한) 계약학과를 수료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은 본 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준한다. <u>다만, 기계설비제어공학과, IT융합소프트웨어공학과 및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의 학생은 4학기를 등록하고 석사과정 30학점 이상 취득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</p>

[별표 1 : 제3조 관련]

석사학위과정					
대학원	계열	학과	협약기관	학위명	입학 정원
IT융합 과학 경영 산업 대학원	인문 사회	HRD학과	한국산업인력 공단 등	경영학 석사	20명
	공학	안전환경공학과	(주)디에스캠, 대산케미칼 등	공학 석사	20명
	공학	기계설비제어공학과	네브레이코리아, 티아이오토모티브 등	공학 석사	20명
	공학	IT융합소프트웨어공학과	(주)로젠솔루션, 피에스케이(주) 등	공학 석사	20명
	공학	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	휴랩, DSME정보시스템 등	공학 석사	20명
계		5개 학과	-		100명

의안번호	제 1 호	심의 안건
년 월 일	2021.1.7.	

「학사운영에 관한 규칙」
일부 개정 (안)

제 출 자	위원장
제출년월일	2021. 1. 7.

「학사운영에 관한 규칙」 일부 개정(안)

1.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

-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대비 미진사항 규정 정비
 - 교양 및 HRD교과과정위원회 명칭 사용
 - 교양 교과 영역별 책임교수제 근거 마련
- 외국어능력인정 어학시험 총점 변경에 따른 점수 환산 반영
- 부정행위자로 처벌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의미 명확화

2. 신구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<p>제35조(교과과정위원회 등) ① <생략> ② 대학교과과정위원회 산하에 교양(수리과학전산 포함) 및 HRD 교과영역별 해당교과의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 등의 심의를 위하여 <u>각기 소위원회</u>를 두며, 소위원회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추가> (개정 2017. 3. 1., 2017. 7. 1.)</p> <p>③ <생략> ④ <생략> ⑤ <생략> ⑥ <생략> ⑦ <생략> ⑧ <생략></p>	<p>제35조(교과과정위원회 등) ① <동일> ② 대학교과과정위원회 산하에 교양(수리과학전산 포함) 및 HRD 교과영역별 해당교과의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 등의 심의를 위하여 <u>각각 교양 교과과정위원회와 HRD교과과정위원회를 두며</u>,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u>그리고 교양교과과정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교양 영역별 책임교수를 지정·운영한다.</u> (개정 2017. 3. 1., 2017. 7. 1.)</p> <p>③ <현행과 같음> ④ <현행과 같음> ⑤ <현행과 같음> ⑥ <현행과 같음> ⑦ <현행과 같음> ⑧ <현행과 같음></p>	<p>교양 및 HRD교과과정위원회 명칭 사용 교양 교과 영역별 책임교수제 근거 마련</p>
<p>36조(외국어능력인정) ①학칙 제38조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.</p>	<p>36조(외국어능력인정) ①학칙 제38조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.</p>	<p>TEPS 총점 변경 (990점→600점)에 따른 점수 환산 반영</p>

현행		개정(안)		개정사유
구분	인정기준(점수·Level)	구분	인정기준(점수·Level)	
TOEIC	600점	TOEIC	600점	
TOEFL IBT	57점	TOEFL IBT	57점	
TEPS	476점	TEPS	255점	
G-TELP	Level 3 71점	G-TELP	Level 3 71점	
TOEIC Speaking	Score 120	TOEIC Speaking	Score 120	
TOEIC Writing	Score 120	TOEIC Writing	Score 120	
TEPS Speaking	3+	TEPS Speaking	3+	
TEPS Writing	3+	TEPS Writing	3+	
GST	5	GST	5	
OPIc	IM	OPIc	IM	
일본어능력시험(JLPT)	N2	일본어능력시험(JLPT)	N2	
JPT	600점	JPT	600점	
SJPT	6	SJPT	6	
한어수평고시(新 HSK)	5급	한어수평고시(新 HSK)	5급	
② <생략> ③ <생략>		② <현행과 같음> ③ <현행과 같음>		
제65조(부정행위자의 처벌) ① <생략> 1. <생략> 2.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<추가>보았을 때 3.~5. <생략> ② <생략> ③ <생략>		제65조(부정행위자의 처벌) ① <현행과 같음> 1. <현행과 같음> 2.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 았을 때 3.~5. <현행과 같음> ② <현행과 같음> ③ <현행과 같음>	부정행위자로 처벌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의미 명확화	